

(재) 서울디자인재단



수신자 내부결재

(경유)

제 목 『2017년 복무 관리 계획(안)』내용 일부 수정의 건

- 1. 『2017년 재단 복무 관리 계획(안)(2017.08.01.)』과 관련입니다.
- 2. 위 호와 관련하여, 지문 미입력 소명 및 야간근무에 대한 운영 방법을 변경 시행하고자 합니다.

< 아 래 >

- 가. 건명 : 2017년 재단 복무 관리 계획 변경의 건
 - ① 야간근무 운영 방법 변경의 건
 - ② 지문 미입력 소명 방법의 건
- 나. 내용
 - ① 야간근무 운영 방법 변경의 건
 - 목적
 -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에 대한 근태관리 기반 미비
 - 불가피한 야간 및 심야근무자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
 - **야간근무 범위** : 22:00 ~ 익일 06:00 (8시간)
 - ㆍ야간근무 보상 처리

여번	근무형태	기존	변경	
언민			근무시간	보상휴가
1	22:00 ~ 24:00		2시간	0.5일
2	22:00 ~ 익일 02:00	기준없음	4시간	1일
3	22:00 ~ 익일 06:00		8시간	2일

- ·야간근무 신청 및 보상휴가 처리 방법
 - 야간근무 계획 및 명령
 - * 야간근무계획 상신 : 야간근무 전일 까지 계획기안 상신 [결재선 : 근무자-복무담당자(협조)-팀장-본부장-대표이사 전결]
 - * 야간근무명령 상신 : 야간근무 당일 까지 명령서 상신 [결재선 : 근무자-복무담당자(협조)-팀장-본부장 전결 / ※계획서 첨부 필]
 - **야간근무 결과보고** : 시행 후 일주일 이내 결과보고 상신

※ 미 상신 시 보상휴가 불인정

[결재선 : 근무자-복무담당자(협조)-팀장-본부장-대표이사 전결]

- 보상휴가 신청: '근태 및 휴가' 신청란에서 야근근무 보상휴가 신청
- ※ 야간근무 시행 직원에 한해 심야시내교통비 지급
- ※ 개인 사정에 따라 보상휴가는 3주 이내 사용 가능(2일의 보상휴가 발생 시, 하루씩 끊어서 사용 가능)
- ※ 근로기준법 제56조(연장·야간 및 휴일 근로) 사용자는 연장근로(제53조·제59조 및 제6 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)와 야간근로(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)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.
- · 적용시기 : 2017년 9월 1일자 시행

② 지문 미입력 소명 변경의 건

- ・목적
 - CCTV 확인 소명의 비효율 해소 및 팀장 확인 소명을 통한 팀원의 근태관리 역할 강화
 - CCTV 보관 기한(3주)이 제한에 따른 월 초 CCTV 소명자료 제출 불가에 따른 문제 해결
- ·내용: 해당 부서장 확인기안에 따른 증빙으로 변경

지문 미입력 시 소명방법					
기존	변경				
CCTV 확인 및 캡쳐사진 첨부 증빙기안	해당 직속 부서장(팀장) 확인기안에 따른 증빙				

•소명신청 방법

- (1) 지문 미입력 날에 대한 사유 및 확인서 작성 및 부서장 서명 ※ 확인서 양식 별도 배부 예정
- (2) '지문 미입력 소명'협조 기안 상신(※ 부서장 확인서 첨부) [결재선: 근무자-복무담당자(협조)-팀장 전결]
- · 적용시기 : 2017년 9월 1일자 시행
- ※ 붙임 1. 2017년 재단 복무 관리 계획(안) 1부.붙임 2. 근태소명확인서(양식) 1부. 끝.

	선임 09/19	경영지원팀장 09/20	경영본부장 09/21	대표이사 09/21
	번 <mark>부철훈</mark>	지서해	경영본부장 박진배	대표이사 이근
협조자				

시행 경영지원팀-26508 (2017.09.21.) 우 03098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83 (종로 6가) 전화번호 02-2096-0101 팩스번호 2153-0005